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

안녕하십니까?

님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.

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제6 “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” 중 제2호마에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”은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5호에 교육연구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

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주무관

종합계획팀장

도시계획과장

05/29

협조자

시행 도시계획과-8004

(

) 접수

(

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

/ <http://www.seoul.go.kr>

전화 2133-8324 /전송 2133-0736

/ kkon9@seoul.go.kr

/ 비공개(6)